

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

2)기능

-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검토·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
-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
6.심사결과

- 수정안 의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)

7.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1998. 10.
기획경제위원회

1.심사경과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

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회부일자

1998년 10월 2일

다.상정일자

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1998년 10월 20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
가.제안이유

우리市 재정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조례 등 4개 조례를 통합 규정하고 기금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주요골자

(1)예산편성의 기본방향(안 제4조)

- (가)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
- (나)시민 편익에 중점을 둔 자원배분
- (다)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
- (라)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확대

(2)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·제9조)

- (가)기능 :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관련사항 심의

(나)구성 :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

- ①위원장 :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
- ②부위원장 : 기획예산실장
- ③위원

-서울특별시 3급이상 관계 공무원
-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(3)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0조·제11조)

(가)기능 : 민자유치사업 주요시책 등 심의

(나)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

- ①위원장 :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
- ②부위원장 : 기획예산실장
- ③위원

-서울특별시 3급이상 관계 공무원
-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

(4)기금설치의 기본원칙(안 제20조)

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 설치

(5)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21조제3항)

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시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 가능

(6)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횟수, 공개대상 등 규정(안 제28조 내지 제32조)

다.참고사항

- (1)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118조·동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6조의2·동법 제30조·동법 제118조의3,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
※관련내용 별첨
- (2)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3.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

○동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,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,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,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등 4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과다한 조례의 수를 감축·정비하고, 기금운용에 있어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시금고로 일원화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며

○조례구성 내용을 보면

- 제1장 총칙(안 제1조내지 제3조)
- 제2장 예산편성(안 제4조내지 제7조)
- 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(안 제8조내지 제19조)
- 제4장 기금운용(안 제20조내지 제27조)
- 제5장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(안 제28내지 제32조)로 되어 있습니다.

○조례안의 각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법령 미기재, 법적예산안 제출기한 미표기, 위원회의 공무원과 민간인 위원수 범위 미정과 표기착오 및 자구정정 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

- 첫째, 제1조(목적)중 서울특별시는 (이하"시"라 한다)라고 하였으나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서울특별시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1조의 (이하"시"라 한다)는 삭제하고
- 둘째, 제2조 (재정운영의 기본원칙)에서 재정운영권자는 시장이며,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용어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"시"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"를 서울특별시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"로
- 셋째, 제4조(예산편성의 기본방향)에는 예산편성근거법령을 삽입하여 "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

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"를 "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"로 하고

- 넷째, 제7조(예산안 제출등) 제1항에 있어 예산안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조문중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에 "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"를 명시 삽입하여야 하고

- 다섯째, 제9조(재정위원회구성)제2항과 제11조(민자심의회구성)제2항의 위원 위촉대상자는 객관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의 위원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각 조항 말미 ".....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"를 ".....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,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000로 한다"로

- 여섯째, 자구정정을 요하는 사항으로

- 제7조제1항에 있어 "시장은 위 제6조의..."에서 "위"를 삭제하고
- 제17조 및 제19조의 "위원회와 실무위원회..."에서 실무위원회를 "소위원회"로
- 부칙 제1항에 있어 단서규정인"... 다만,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개정규정은..."에서 동 조례는 제정조레이므로 "개정"을 삭제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상기 사항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
○마지막으로 동 조례안 중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별 조례로 운용중인 17개의 기금조례를 통폐합하여 별도의 단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

• 료됩니다.

4.질의·답변 : 생략

5.수정안의 요지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20일,

오상준의원 외 1인

나.수정이유

○조례안의 부적합한 제명을 바로 하고

○예산편성의 근거법령 미기재, 법적예산

안 제출기한 미표기, 위원회의 공무원 민간인 위원수 범위 미정과 표기착오 및 자구정정 등을 요하는 조문에 대한 보완과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수정 주요골자

- (1)조례안 제명을 "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"라 함.
- (2)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명시함.(안 제4조)
- (3)법적 예산안 제출기한인 "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"를 명시함.(안 제7조제1항)
- (4)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함.(제9조제2항, 제11조제2항)

6.심사결과

○수청안 의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차)

7.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16,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 : 11,531명
- 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- 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- 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16,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 : 11,531명
- 2.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- 3.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- 4.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·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(이 조례시행전에 초과한 현원 168명 포함)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, 다만 초과 현원이 1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제2조제1호 중원 정원중 지방자치단체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3명에 대하여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한시정원)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24명(교통운영개선기획단)과 15명(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)은 2002년 12월 31일까지, 30명(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)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